

의 이유로 서울특별시보에만 게재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가급적이면 행정의 투명성 확립차원에서 서울특별시보 뿐만 아니라 이외의 홍보매체를 반드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함이 좋겠다고 생각됨.

다.안 제7조(수탁자 선정)

○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제반 수탁자 선정기준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기 타

○ 이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혐오 시설로 비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며, 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시설관리 등)등에 대하여도 별도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12
----------	-----

2000년 11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다.상정일자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의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2000년
11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정규태)

가.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 10. 1)에 따라 시·도 단위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1)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제명 : 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 →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두어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법 제20조제1항)

(3)당연직 위원에 아동 및 여성보호를 관장하는 여성정책관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1인 이던 것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추가하여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부위원장도 보건복지국장 1인에서 여성정책관을 추가하여 2인으로 하도록 함.(안 제 4조)

(4)위원회 개최요구권 등을 조정함.안 제7조)

○ 정기회 개최시기 : 매분기 1회 → 매년 1회

○ 임시회 개최 요구권 요건 추가 : 총 위

원수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
※현행 : 위원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석수)

가.개 요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 10. 1)에 따라 시·도 단위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 당연직위원에 여성정책관을 추가하며
 - 민간인도 행정1부시장과 함께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여성정책관도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규정하였으며
 -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수 3분의 1이상 요구로 회의개최 소집요구가 가능토록 변경하려는 것임.

나.검토사항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방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이외에 공동위원장제 도입, 위원수 3분의 1이상 회의개최 소집 요구권의 추가 등은 조례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없 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13
----------	-----

2000년 11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 다.상정일자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2000년 11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정규태)

가.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2000. 8. 1)되어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 (1)제명변경(안 제명)
 -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
조례
- (2)부랑한센병환자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근거 신설(제2조제8호 및 제9호)
 -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 (3)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나병」을 「한센병」으로 함.